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39
----------	------

2018년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8년 3월 20일
- 다. 회부일 : 2018년 3월 26일
- 라. 상정일 : 제28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1) 제안이유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하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단체)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개관일자 : 2008. 11. 01.
- 시설규모 : 부지 2,286.25 m^2 , 건물 5,208.74 m^2 (지하 2층, 지상 4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19. 1. 1. ~ 2021.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200백만원(2018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94백만원, 물건비 979백만원, 경상이전 272백만원, 자본지출 412백만원, 사업비 2,222백만원, 사업외 지출 234백만원, 예비비 등 8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2018. 12. 31.)되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과 안정적인 수련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은 2008년 개관 이후 민간에 위탁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지난 2017년 7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개관일자 : 2008. 11. 1.
- 시설규모 : 부지 2,286.25㎡, 건물 5,208.74㎡ (지하 2층, 지상 4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 3년 (2019.1.1.~2021.12.31.)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200백만원(2018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의 개관이후 민간위탁 현황 >

- 1차 민간위탁 : 2008.10.01~2011.10.31.(3년, 수탁법인: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차 민간위탁 : 2011.11.01~2013.12.31.(2년, 수탁법인: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3차 민간위탁 : 2014.01.01~2016.12.31.(3년, 수탁법인: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4차 민간위탁 : 2017.01.01~2018.12.31.(2년, 수탁법인: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나.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시설로,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면²⁾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즉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다만, 서울시는 예산편성의 한계에 의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분(5.1%~ 6.5% 수준)만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함에 따라 수탁기관이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업무수행보다 수익성이 높은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다른 수익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의 예산 및 서울시 지원현황 >

(단위:천원)

연도	청소년수련관			서울시 지원액	수련관 예산액 대비 서울시 지원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	4,900,000	4,175,423	724,576	320,000	6.5%
2016	4,900,000	3,968,734	931,265	290,000	5.9%
2015	5,310,000	4,542,078	767,921	270,000	5.1%

- 평생교육국이 수탁기관에게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환경과 예산을 제공하고 있는지, 수탁기관이 위탁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의 2018년 사업계획 중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청소년활동과 무관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청소년수련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일부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립마포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시설인지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년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현황 중 비청소년 대상사업 >

(단위:천원)

프로그램명	내 용	계 획		소요예산	
		회	명	수입	지출
와인소믈리에	와인 기초수업	48	240	2,400	1200
성인영어	성인기초영어	144	1,152	10,944	5,472
쎬!미술	유아기본미술	144	1,440	9,000	4,500
발라드	7080 추억의 노래 부르기	48	720	3,600	1,800
예쁜글씨POP	POP취미 및 창업	96	480	5,280	2640
교양취미교실	교양취미교실	48	280	1,440	720
독서지도	청소년 독서지도자과정	48	720	7,920	3,960
인상학명리학	얼굴로 보는 인상학	48	384	2,400	1,200
베이비마사지	신생아마사지활동	48	192	1,584	792
유아패키지	유아방학특별활동	10	150	5,400	2,800
트니트니	유아신체발달활동	144	720	7,200	3,600
베이비교실	유아신체발달활동	48	240	2,100	990
성인발리댄스	가슴, 허리, 엉덩이 여성의 모든 곡선을 흔들여 주는 동작이 특징이다	240	2,880	12,240	8,448

- 또한, 근무인원 대비 과다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탁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지 않고, 사실상 교육컨텐츠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 또는 일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인력현황 >

(2018.5.31. 기준)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고용직	소계	계약직	일용직	기타
정원	26	26	1	1	1	3	4	10	6						
현원	35	21		1		3	2	13	2			14	14		

< 최근 3년간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성과 >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프로그램운영실적		7개 분야 24개 사업 234개 프로그램	7개 분야 24개 사업 235개 프로그램	7개 분야 24개 사업 220개 프로그램
청소년 이용실적	총이용인원	844,943	861,499	836,024
	청소년이용인원 (청소년이용률)	595,700 (71%)	616,526 (72%)	588,268 (70%)
대외협력실적	지역연계	126개 기관 46개 프로그램 (884회 운영)	175개 기관 82개 프로그램 (329회 운영)	127개 기관 145개 프로그램 (145회 운영)
	학교연계	106개교 30개 프로그램 (1,282회 운영)	128개교 45개 프로그램 (671건)	147개교 36개 프로그램 (147회 운영)
공모사업실적		36개 사업 (435,747천원)	23개 사업 (327,637천원)	19개 사업 (386,814천원)

-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재정·회계·조직·시설 운영, 사회기여, 만족도 등)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평가가 주로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 활동의 진흥 및 기여, 제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청소년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운영했는지 여부, 청소년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었는지 여부,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했는지 여부 등)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비전문성 및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여건 미흡 및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39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나 2018년 하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단체)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개관일자 : 2008.11.01.
- 시설규모 : 부지 2,286.25㎡, 건물 5,208.74㎡ (지하 2층, 지상 4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19.1.1. ~ 2021.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200백만원('18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94백만원, 물건비 979백만원, 경상이전 272백만원, 자본지출 412백만원, 사업비 2,222백만원, 사업외 지출 234백만원, 예비비 등 8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이문자 (☎2133-4121)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사업내용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시설규모 : 연면적 5,208.74㎡(지상4층, 지하2층)
- 주요사업 :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등
- '18년예산 : 5,200백만원

○ 위탁 추진경과

- 1차 : '08.10.01 ~ '11.10.31.(3년,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차 : '11.11.01 ~ '13.12.31.(2년,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3차 : '14.01.01 ~ '16.12.31.(3년,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4차 : '17.01.01 ~ '18.12.31.(2년, 학교법인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성과평가 개요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평가대상 기간 : 2015.1.1 ~ 2016.12.31(2년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평가결과 요약

운영 및 관리 (11)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5)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	인사 및 조직 (20)	환경 및 안전 (19)	대외 협력 및 홍보 (5)	종합평가 (10)	합계 (100)
11	14	16.8	18.4	19	5	10	94.2

○ 운영 및 관리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1. 운영 및 관리 (11점)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2.0	2.0	○ 중장기발전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고 추진계획이 목표에 부합되며,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중장기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연간운영계획도 청소년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함. ○ 운영대표자는 자격을 갖춘 시설장으로서 공식적인 직위와 권한으로 시설 운영을 수행함. ○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규정을 제정 관리함.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0	2.0	
	1.2 기관 운영체계	7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 기준 및 시설장 여부	5.0	5.0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2.0	2.0	

○ 청소년 이용 및 참여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5점)	2.1 청소년 이용	9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0	4.0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시설이용률은 71%로 우수함. ○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 시설이용률은 206%로 매우 우수함.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잘 운영되었으며, 2015년 33건, 2016년 49건의 활동실적이 있고 기관장과의 간담회도 연 2회씩 실시하였음. ○ 자체동아리는 운영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활동비 지원실적이 있으며, 2015년 10개(252명)에서 2016년 13개(294명)로 인원수가 증가하였고 많은 공모사업이나 대외 교류활동 실적(2015년 9건, 2016년 15건)이 있으며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음.
			2.1.2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 시설이용률	4.0	4.0	
	2.2 청소년 참여도	6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3.0	3.0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3.0	3.0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3.1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8	3.1.1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체계성	4.0	4.0	○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개발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고,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직원회의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 연간단위의 프로그램 평가계획서가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주기적인 평가활동과
			3.1.2 연간 프로그램 평가 운영의 적절성	4.0	4.0	
	3.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12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4.0	4.0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램의 운영		3.2.2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4.0	0.8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음. ○ 전체사업비 중 청소년활동사업비 비율은 32.88%로 매우 미흡함.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운영의 질적 관리를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2.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4.0	4.0	

○ 인사 및 조직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4. 인사 및 조직 (20점)	4.1 직원 확보율	8	4.1.1 직원 확보의 수준	4.0	2.4	○ 최근 2년간 연평균 직원확보율 3.7%로 보통수준임. 정규직원 확보 필요 ○ 수용정원 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율이 연평균 2.5%로 양호함. ○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이 95.9시간으로 매우 우수함. ○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우수하나(인증, 공모 프로그램 선정자 포상실시 등)추후 직원 사내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제안함. ○ 안전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지침에 따라 실시함.
			4.1.2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4.0	4.0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12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3.0	3.0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3.0	3.0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2.0	2.0	
			4.2.4 직원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2.0	2.0	
			4.2.5 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여부	2.0	2.0	

○ 환경 및 안전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5. 환경 및 안전 (19점)	5.1 시설환경 및 안전	19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여부	3.0	3.0	○ 수련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추후 휴게실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증설이 요구되며 상담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실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분리된 상담공간이 필요함. ○ 안전관리계획서 및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작성됨. ○ 안전보험 가입하였으며, 매월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함. ○ 청소년 안전관리(안전교육 실시, 응급처리설비, 안전관련 공지 및 안내판 부착 등) 요강을 준수하고 있음.
			5.1.2 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성	4.0	4.0	
			5.1.3 안전보험 가입	4.0	4.0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3.0	3.0	
			5.1.5 청소년의 안전관리	5.0	5.0	

○ 대외 협력 및 홍보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6. 대외 협력 및 홍보(5점)	6.1 대외협력 및 홍보	5	6.1.1 대외협력 및 연계 정도	3.0	3.0	○ 매년 대외협력 계획서 작성,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실적, MOU체결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분석 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홍보활동을 활성화함. ○ 각종 브로슈어, 홍보물, 인터넷 홍보, 기사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됨.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2.0	2.0	

○ 종합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점수	평가결과
7. 종합 평가(10점)	7.1 종합평가	10	7.1.1 지방자치단체의 시 설발전 지원 노력수준	5.0	5.0	○ 최근 지자체 예산지원 증가율이 연평균 13%로 매우 우수함. ○ 청소년육구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입에 반영하고 있음. 대민포럼 등을 기획하여 공유할 것을 제안함. ○ 기타 지자체로부터 기능보강사업 및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업무협조가 원활함. ○ 기관장의 대외활동, 기관운영 개선노력, 직원 직무환경 개선 수련활동신고제 운영 등 기관의 전반적인 발전노력이 높이 평가 됨(민원처리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며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5.0	5.0	

□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

○ 총괄 정산내역

(단위 : 원)

연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2017	4,900,000,000	4,175,423,881	724,576,119
2016	4,900,000,000	3,968,734,170	931,265,830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도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사업비 등
2017	4,175,423,881	745,810,360	869,064,642	225,199,265	263,871,489	2,071,478,125
2016	3,968,734,170	691,715,960	881,448,555	206,503,501	109,493,500	2,079,572,654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재위탁 협약 체결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로 위탁법인 선정, 협약 체결
-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
 -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